

# 학교법인 남북학원 정관

제정 1990. 12. 20

개정 1997. 4. 8, 1998. 12. 4, 2000. 6. 13, 2001. 4. 17, 2002. 4. 2, 2003. 12. 20, 2003. 12. 20, 2005. 2. 18, 2005. 5. 10, 2005. 5. 20, 2005. 8. 8, 2005. 8. 30, 2006. 11. 9, 2007. 11. 26, 2008. 1. 24, 2009. 2. 10, 2011. 11. 21, 2012. 1. 25, 2012. 2. 27, 2012. 6. 2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남북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경전문대학(교명은 "문경대학교"이라 한다)을 설치·경영한다. <개정 2011.11.21>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북 문경시 호계면 대학길 161번지에 둔다.  
<개정 2011.11.21>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으로 보고한 정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11.26], <개정 2009.2.10>, <개정 2012. 6. 22>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삭제 2006.11.9>

**제13조** <삭제 2006.11.9>

**제14조** <삭제 2006.11.9>

**제15조** <삭제 2006.11.9>

**제16조** <삭제 2006.11.9>

**제17조** <삭제 2006.11.9>

## 제3장 기관

###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5.5.10>, <개정 2006.11.9>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6.11.9>

1. 이사 5년(이내)
  2. 감사 3년(이내),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 ② <삭제 2006.11.9>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처리한다.<개정 2005.8.30>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일반이사 선임의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이사정수의 4분의 1, 소수점이하 절상) [본조신설 2006.11.9]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6>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개정 2007.11.26>

④ 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문경대학교 학평위원회에 둔다.<개정 2011.11.21>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추천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9>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6.11.9>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신설 2006.11.9>, <개정 2007.11.26>

⑥ 제6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1.9>

⑦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2006.11.9>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1.9>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개정 2005.8.30>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1.26>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06.11.9>, <개정 2007.11.26>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1.9>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6.11.9>

## 제2절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11.9>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9>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9], <개정 2007.11.26>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6>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9>

###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2(대학평의회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31조의3(평의회 구성)**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11.9]

**제31조의4(교내 평의원의 위촉)**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3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06.11.9]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1.9], <개정 2007.11.26>

**제31조의7(평의원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11.9], <개정 2007.11.26>

**제31조의8(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1.9]

##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삭제 2007.11.26>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삭제 2007.11.26>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삭제 2007.11.26>

**제35조(관리인)** <삭제 2007.11.26>

##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10>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9.2.10>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10>

##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 제1관 임명

**제39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9>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이내)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개정 2007.11.26>

③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정년보장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5.10>, <개정 2006.11.9>

####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조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6.22>

2. 급여 :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학생지도 및 진로상담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2.6.22>

⑤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직중인대학교원에대한임용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개정

2009.2.10>

1. 교 수 정년까지, 단 신규 채용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임명.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4년

4. <삭제 2012.6.22>

⑥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기타 교원의 보직은 당해 학교의 장이 보한다. <개정 2006.11.9>, <개정 2009.2.10>

⑦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제39조의 2(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등은 따로정한다.

③ 심사위원회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9조의 3(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10%이내로 한다.

**제39조의 4(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제39조의 5(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05.5.10>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의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9조의 6(겸임교원 등)** 대학의 장은 제39조제2의 교원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0]

**제40조(기간제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

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1. 교원이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6.11.9>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개정 2009.2.1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7.11.26>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1.9>, <개정 2008.01.24>

1.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1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9>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9.2.10]

**제47조의3(명예퇴직 수당)** 명예퇴직 수당지급 제도에 대한 실시 시기,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10]

**제48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9>

**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11.9>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1조(인사위원회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의 교원으로 조직한

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6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

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일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 ~ 제82조 (전행 25422-340)에 의거 삭제

### 제4절 사 무 직 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제7장 직제

###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 ② 법인사무국에는 사무과와 시설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전문대학

**제90조(총장 등)**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2.10>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③ 전문대학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산학협력단, 기획처, 산학협력처, 교학처, 사무처를 둔다.

- ② 산학협력처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 또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2.2.27>, <개정 2012.6.2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부속시설)**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6.22>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2.10>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절 정원

**제94조(정원)** 법인 및 전문대학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8장 보칙

**제95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매일신문에 공고한다.

**제9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신영국	1943.10.15	4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9번지
이사	서성한	1940.11.30	4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웨밀리아파트 226-603
이사	황우홍	1938.04.05	4년	경북 점촌시 중앙동 273-6번지
이사	권상철	1938.03.01	4년	경북 점촌시 점촌동 435번지
이사	김학호	1929.11.18	2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12-19번지
이사	백찬기	1926.07.19	2년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0-6번지
이사	정용화	1920.01.02	2년	경북 문경군 호계면 막곡리 295번지
이사	이창수	1943.02.04	2년	경북 점촌시 중앙동 187-1번지
이사	김영환	1947.05.27	2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주공아파트 230-405
이사	신범식	1936.08.16	1년	경북 점촌시 우지동 336번지

####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199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문경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 은 이 정관에 의하여 "문경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현재 재직중인 전임교원 중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승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두어 그 정수에 달하도록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의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③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1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1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 이 정관은 2012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정관의 변경)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임면) 제3항 및 제5항, 제91조(하부조직) 제2항, 제92조(부속시설) 제2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전임강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별표 1 >

## 법인일반직원 정원

총 계	7명
일반직계	5명
2급(참여)	1명
4급(참사)	1명
5급(부참사)	1명
7급(부주사)	1명
9급(부서기)	1명
기능직계	2명
8등급(운전원)	1명
9등급(타자원)	1명

## 학교일반직원 정원

<b>총 계</b>	<b>57명</b>
<b>일반직계</b>	<b>25명</b>
4급(참 사)	1명
5급(부참사)	1명
6급(주 사)	2명
7급(부주사)	2명
8급(서 기)	5명
9급(부서기)	14명
<b>기술직계</b>	<b>14명</b>
4급(사서참사)	1명
7급(전기부주사)	1명
8급(사서보)	1명
(전산서기)	2명
9급(사서보)	2명
(전산부서기)	2명
(토목부서기)	1명
(건축부서기)	1명
(전기부서기)	1명
(열관리부서기)	1명
(소방설비부서기)	1명
<b>기능직계</b>	<b>18명</b>
7등급계	2명
8등급계	5명
9등급계	5명
10등급계	6명